

2025년도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 보고(1차)

1. 보고이유

가. 「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 제16조 규정에 따라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(통합계정) 운용계획 변경에 대하여 의회에 보고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2025년 타 지방자치단체 재해·재난 구호 지원을 위한 예탁·예치금 변경 반영

나. 운용규모 : 1,569,028백만원(당초 계획 대비 변동 없음)

〈 수입 및 지출 변경내역 〉

(단위 : 백만원)

＜ 수입계획 ＞			
구 분	당 초 (A)	변 경 (B)	증 감 (B-A)
계	1,569,028	1,569,028	-
융자금 원리금회수	15,250	15,250	-
예수금	1,332,989	1,332,989	-
예탁금 원금회수	13,970	13,970	-
예치금회수	144,036	144,036	-
이자수입	62,783	62,783	-

＜ 지출계획 ＞				
구 분		당 초 (A)	변 경 (B)	증 감 (B-A)
계		1,569,028	1,569,028	-
재무 활동	소 계	1,569,021	1,569,021	-
	예수금 원금상환	160,473	160,473	-
	예수금 이자상환	71,282	71,282	-
	예탁금	1,237,200	1,242,200	5,000 (증0.4%)
	예치금	100,066	95,066	△5,000 (△5.0%)
행정 운영 경비	소 계	7	7	-
	기본경비	7	7	-

○ 수입계획 변경

- 변경 내역 없음

○ 지출계획 변경

- 예탁금 : 1,237,200백만원 → 1,242,200백만원 (증 5,000백만원)

- ▶ 대형산불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한 지역교류협력기금 예탁금 증액

- | | |
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
| • 지역교류협력기금 | 0 → 5,000백만원(증 5,000) |
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

- 예치금 : 100,066백만원 → 95,066백만원 (△5,000백만원)

- ▶ 예탁금 규모 조정에 따른 예치금 감액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1조(기금운용계획의 변경)

「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 제16조(보고)

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(기금운용계획의 변경)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6조(보고) 시장은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 다만, 보고시기가 폐회 중일 때는 상임위원장에게 우선 보고한 후 다음 회기 회의에서 안건으로 상정하여 보고한다.

※ 작 성 자 : 예산담당관 예산총괄팀 김민영(☎ 2133-6813)